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9

2023. 9. 11.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8. 30. / 박경원 의원 등 9명

나. 회부일자 : 2023. 8. 3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9.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게시로 인해 보행자 안전 위협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당현수막 게시 규정을 신설하여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통행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정당현수막 게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안 제29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윤선기)

○ 정당 현수막은 2022.12월부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신고, 금지・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주요 교차로 등에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 되어 시민들이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고 전방 주시 산만으로 차량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음.

-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허가·신고 규제 폐지 이전에 월 2,138건에서 개정 이후에는 월 3,549건으로 급증하 는 추세이기에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함.
- 본 조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코자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정당현수막 게시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통행안전과 교통사고 사전예방코자 하는 사항으로 법률 적용에 있어 다소간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시민의 안전이라는 대의적인 차원에서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O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O 없 음

붙임: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